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177

발의연월일: 2021. 12. 30.

발 의 자: 장경태·김영배·김원이

김의겸 • 민형배 • 박홍근

송옥주 · 오영화 · 유정주

장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현행법은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별로 기탁금을 정하고 있고, 당선, 사망 또는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반환하고 있음.

기탁금은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 선거의 과열·혼탁을 방지하며 선 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기능을 함.

그러나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장애인후보자의 경우에는 기탁금 규정이 정치참여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장애인후보자의 기타금액을 하향하고 그 반환요건을 완화하여 청년·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를 "제1항"으로,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제1항의 기탁금(제60조의2제2항의 기탁금을 포함한다)에서부담한다"를 "제2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④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제1항의 기탁금(제60조의2제2항의 기탁금을 포함한다)에서 부담한다.

제57조제2항 중 "제56조제3항에"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로,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하는 때에 공제하되, 그 부담비용이 반환할

기탁금을 넘는 사람은 그 차액을, 기탁금 전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는 사람은 그 부담비용 전액을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 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등록된 장애인이 후보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 일"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기탁자에게 반환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관할선거구선 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해당자가"를 "제56조제4항에 따 라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하 는 때에 공제하되,"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에게 징수를 위탁하고"를 "부담비용이 반환할 기탁금을 넘는 사람은 그 차액을"로.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하여"를 "기탁금 전액이"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를 "지 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람은 그 부담비용 전액을 해당 선거구선거 관리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당선 또는 사망한 경우 포함)에는 기탁금 전액
- 2.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④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납부기한까지 해당자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우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출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第56條(客託金) ① (생 第56條(寄託金) ① (현행과 같음) 략) ② 第1項의 寄託金은 滯納處分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 이나 强制執行의 대상이 되지 는 청년 또는 「장애인복지 아니하다.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 애인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 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③ 제1항----제2항의 기탁금은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 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제1항의 이 되지 아니한다. 기탁금(제60조의2제2항의 기탁 금을 포함한다)에서 부담한다. <신 설> ④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 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제1항의 기탁금(제60조의2제2항의 기탁 금을 포함한다)에서 부담한다. 第57條(寄託金의 반환 등) ① (생 |第57條(寄託金의 반환 등)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

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제

1항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하는 때에 공제하되, 그 부담비용이 반환할 기탁금을 넘는 사람은 그 차액을, 기탁금 전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람은 그 부담비용 전액을 해 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한다.

<신 설>

<신 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자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 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등록된 장애인이 후보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기탁자에게 반환한다.

- 1.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득표한 경우(당선 또는 사망한 경우 포함)에는 기탁 금 전액
- 2.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
 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
 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③ 제56조제4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제 1항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하는 때에 공제하되,----부담비용이 반환할 기탁금을 넘는 사람은 그 차액을--기탁금 전액이-----기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람은 그 부담비용 전액을 해

다. 이 경우 제271조에 따른 불 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 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 용은 우선 해당 선거관리위원 회가 지출한 후 관할세무서장 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 다.

<신 설>

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 날부 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후단 삭제>

④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는 제3항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자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 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제271조에 따른 불 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 용은 우선 해당 선거관리위원 회가 지출한 후 관할세무서장 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 다.

⑤ (현행과 같음)

⑤ (생략)